

중소기업 취업자 혜택제도 안내

정부에서는 구인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, 청년들의 신규 취업과 장기근속을 촉진하고자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각 업체에서는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1.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

□ 소개 :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*에 취업하는 경우 발생한 소득세의 일정율을 감면하는 제도

※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(감면대상 업종 별도 확인 필요)

- 대상자 : 청년(만15세~34세 이하), 60세 이상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
- 감면혜택

구분	청년	60세 이상자, 장애인, 경력단절여성	비고
감면기간	5년	3년	상세 혜택은 취업시기에 따라 상이
감면율	소득세의 90%	소득세의 70%	
감면한도	150만원		

- 신청 방법
 - (근로자→중소기업) 감면신청서 제출
 - (중소기업→관할세무서)감면대상명세서 제출
- 문의 : 국세청 홈택스 126

2. 청년 내일 채용공제

- 소개 : 중소·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일정기간(2년) 동안 청년·기업·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청년에게 성과 보상금 형태로 지급하는 혜택
- 대상자 : 중소기업등에 정규직으로 신규 취업한 청년(연령 : 만15세~34세 이하)
 -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자
 -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필요
- 혜택 : 청년적립금 300만원 + 기업기여금* 300만원 + 정부지원금 600만원
 - ※ 기업기여금 : 기업명의 가상계좌로 정부에서 직접 적립하여 만기시 직원에게 지원(실 부담금 없음)
- 문의 : 고용노동상담센터 1350